제296회 정례회

2010. 12. 24.(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12. 24.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발의일자 : 2010년 11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 2010년 12월 03일

(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고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행위 신고를 활성화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로 하고, 신고대상 부조리행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안 제2조 내지 제3조)

1)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3)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을 정함 (안 제4조)

1)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2)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 신고방법은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우편·팩스·전화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이용 가능 (안 제5조)

○ 공익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 처리,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안 제6조)

○ 부조리행위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신분공개 금지, 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 (안 제7조 내지 제8조)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내지 제12조)

1) 구성 : 위원장(부교육감) 포함 7명 (위촉위원 3명, 당연직 위원 4명)

2) 위원 임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위원이 신고내용의 당사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

○ 보상금의 지급은 3천만 원을 한도로 하되, 다음 기준으로 함 (안 제13조)

<table>
<tr><th>신고유형 (지급대상)</th><th colspan="2">보 상 금 액</th></tr>
<tr><td>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td><td colspan="2">·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td></tr>
<tr><td>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td><td colspan="2">·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급</td></tr>
<tr><td rowspan="2">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td><td>·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td><td>· 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td></tr>
<tr><td>· 알선·청탁 행위 신고</td><td>· 3백만원 이내</td></tr>
</table>

○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안 제15조)

1)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2)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되,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도 가능

○ 보상금 지급 제외 (안 제16조)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 된 사항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매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구명회)

○ 동 조례안은 2010년 6월 8일 제2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체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보류되었다가 제8대 의원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되었던 안건을 다시 상정

○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사립학교 교직원포함)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충북교육을 구현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리척결을 통한 공정하고 신뢰 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및 지도감독을 받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6조 및 「사립학교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2. "공익신고"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공익신고 기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은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5조(공익신고 방법 등) ① 공익신고는 신고자 및 부조리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과 부조리행위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교육청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우편·팩스·전화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사항 중 신고자 또는 부조리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 부조리행위 등의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7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종결할 수 있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교육감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정·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교육감은 신고자의 공익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위원을 징계하거나 해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8조(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 ①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 등이 신고 또는 진술을 함으로써 교육청의 부패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근무부서 배치 등 인사에 배려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2. 보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촉위원은 3명으로 하고,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

2. 당연직 위원은 4명으로 하고, 부교육감·교육국장·기획관리국장·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관련 공무원 및 조사기관의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신고내용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신고내용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신고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한도) ①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제14조(보상금의 신청) 신고자는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위원회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 지급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 된 사항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언론매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17조(보상금의 환수) 교육감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3조 관련)

1. 신고유형별 보상금액

신고유형 (지급대상)	보 상 금 액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급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알선·청탁 행위 신고	·3백만원 이내

2. 신고금액의 결정기준 등

○ 금품·향응 수수액은 감사·수사 등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익 신고서

접수일			접수(문서)번호	
신고자	직·성명		생년월일	
	소 속		전화번호	
	주 소			
	예금계좌번호			
신 고 대상자	직·성명			
	소 속			
신 고 내 용 (6하원칙에 의거 기재)				
증 거 서 류	"증거 목록을 적고 증거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			
비 고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신청서(제14조 관련)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거 주 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대리인 또는 대표자	성 명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의 (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거 주 지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부조리 신고 조사결과 사항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 구 여 부	□ 있음(기관명 :) □ 없음		
	수 령 여 부	□ 있음(금 액 :) □ 없음		
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보상금 신청금액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 및 대리인·대표자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제15조 관련)

충청북도교육청공익신고보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접수번호	20 년 신고 제 호		
보상금 신청인	성 명		
	주 소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지 급 액	금 원정(₩)

충 청 북 도 교 육 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1. 재정수반 요인

조례안 제11조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경비(위원 수당 및 여비, 관계인 출석 여비, 간담회 등)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2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수반 요인이 발생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최근 3년간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중에서 금품·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쳐 적발된 현황을 살펴보면 금품·향응 수수가 6명에 6,280만원, 공금 횡령 및 유용이 4명에 2억 3,582만원 등 총 10명에 2억 9,862만원(1인당 평균 2,986만원)의 부조리행위가 발생하였다.

▲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자료

(단위 : 만원)

연도별	금품·향응 수수		횡령 및 유용		계		비 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8년	4	1,690	2	17,667	6	19,357	
2009년	2	4,450	1	5,600	3	10,050	
2010년		140	1	315	1	455	1인 중복
계	6	6,280	4	23,582	10	29,862	

(2) 위 적발 10건 중 8건은 검찰 및 경찰의 수사와 감사부서의 자체 적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 등의 민원(신고) 등에 의해 적발된 것은 2건으로 '09년도 금품 수수 450만원 1명, '10년도 1명 금품수수 및 횡령 455만원이다.

(3) 민원에 의해 적발된 2건의 경우를 조례안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가정(안 제13조 관련, 별표)할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2009년도에 3천만원(금품수수액 450만원× 10배로 하되, 한도액은 3천만원), 2010년도에 91만원(추징·환수액의 20%로 455만원×20%)을 지급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연간 소요액을 추계한다.

그리고 보상금심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의운영에 따른 실비 성격의 경비로 비용을 추계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1) 보상금

최근 3년간 발생하여 적발된 부조리행위 중에서 제정 추진 중인 조례안에서 규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평균 보상금액은 1,030만원이며, 연간 최고 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이를 연간 소요액으로 추정한다.

▲ 최근 3년간 민원(신고)에 의한 부조리 적발 실적 보상금 적용 추정

(단위 : 만원)

구 분	연도별 보상금 추정				연간평균 보상금	연간최고 보상금	비고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금액(만원)	0	3,000	91	3,091	1,030	3,000	

(2) 공익신고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소요경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위원회 운영은 신고 및 보상금 신청 유무와 매우 밀접하여 편의상 실소요액으로 위원수당 147만원(위촉위원 7명, 1인당 7만원, 3회 기준), 위원회 간담회 운영 60만원(1회당 20만원, 3회 기준) 등 연간 207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2011년도 당초예산 반영 32,070천원)

4. 재원조달 방안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교육감 공약사업(클린 충북교육 청렴봉사 행정 구현)에 포함된 사업으로 교육재정 여건, 공약추진계획을 감안할 때 재원조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5. 부대의견 : 없음.

관 계 법 령 발 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26] [법률 제9968호, 2010. 1.25, 타법개정]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5.28] [대통령령 제21513호, 2009. 5.28, 일부개정]

제71조 (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1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28>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④ 제77조제2항,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72조 (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